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7. 21 선고 2014나21213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7. 21 선고 2014나2121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2가합57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변론 종결 2015. 6. 30.

판결 선고 2015. 7. 21.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2가합57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E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별지 배당금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의 "가)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제 체결일이 언제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제 체결일이 언제인지

(1) 원,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에게 5억 원을 대여한 날인 2011. 12. 16. 또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인 2012. 1. 4.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2. 5. 16. 무렵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6. A 명의 계좌로 4억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6. A과의 사이에, A이 피고에게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되, A이 2012. 1. 4.까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E은 그 무렵 피고에게 '2011. 12. 16. 5억 원을 A 및 B와 연대차용하며, 차용금을 2012. 1. 4.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여, 채권자인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취지의

2011. 12. 16.자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

(라) 한편, A, B, E, D(이하 'A 등'이라 한다)은 피고 앞으로 발행일 2012. 1. 4.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발행일 2012. 1. 4.,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해주었다(A은 피고로부터의 차용금 5억 원을 애초 약정한 변제기인 2012. 1. 4.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차용금이 3억 원이 되었는바, 이에 따라 위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다시 피고에게 발행해주었다).

(마) A은 2012. 5. 16. 남양유업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그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일자는 2012. 1. 4.로 기재되어있다), 위 양도통지는 2012. 5. 17. 남양유업에 도달하였다.

(바) 또한 2012. 5. 16.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24호증의 2, 제25호증의 2, 을다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11,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A은 2012. 1. 4. 이후 피고에게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차용금이 3억 원이 되었는데,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3억 원이므로(이 사건 확인각서에서는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위 일부 변제라는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 각 채권최고액은 위 일부 변제 이후 결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2012. 5. 16.경에 이르러 A 등으로부터 그 대여금을 임의변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E으로부터 2011. 12. 16. 또는 2012. 1.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두었을 수도 있다고 보이나, 그 채권최고액과

계약일자 등은 2012. 5. 16.경 보충되었다고 보인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1. 12. 16. 또는 2012. 1. 4. 체결된 것이 아니라 2012. 5. 16.경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1. 25. 선고 2012다6505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승표

판사해덕진

판사이수현

별지